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본”을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발급[ ]재발급)신청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주된 사업장 (예:본사)	※사업장이 1개인 경우 1-① ~1-④는 작성하지 않고 2-① ~ 2-⑧을 작성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사업장이 본사와 구분된 지사 혹은 건설현장의 경우, 각 지사와 현장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주소	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2-⑦업종	2-⑧사업내용	
⑨ 대행기관	※ 대행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구인 사항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⑩구인직종	직종 ( ), 직무내용(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⑪모집인원	명	⑫국 적	1) 2)
	⑬학 력	최저: 최고:	⑮자격면허	1)
	⑭전 공			2)
	⑯연 령	만 세 ~ 세		
	⑰한국어능력	[ ]상 , [ ]중 , [ ]하 , [ ]관계없음		
	⑱모집 외국인 구분	[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		
	⑲기타(경력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뒤쪽)

근로조건	⑳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1일 평균 시간외(연장) 근로시간: ( )시간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축산업·어업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㉑근로계약 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개월,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㉒휴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 격주 토요일, [ ] 기타			
		농업·축산업·어업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농번기(성어기):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㉓휴게시간	1일 (분)	* 농업·축산업·어업: 1일 ( )회, ( )시간 ( )분			
	㉔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수당: 원), (수당: 원)	상여금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개월)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 )일	
	㉕숙식 제공 여부	숙박	[ ] 제공	숙박시설 유형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미부담	
			[ ] 미제공			
		식사	[ ] 제공	제공 시	[ ]조식, [ ]중식, [ ]석식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미부담	
			[ ] 미제공			
	㉖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2-①~④란과 신청인 성명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남성 [ ]여성		
			여권번호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성)		
			전자우편(이메일)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간을 계산함(단,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 농업·축산업·어업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농번기(성어기)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농업·축산업·어업>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기본급	(월, 시간, 일, 주)급: ( )원 * 수습기간: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 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고정적 수당	(수당: 원), (수당: 원)	상여금	원
		월 통상 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입국자 도입대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또는 2년 가입: 15,000원 3년 가입: 21,9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납입보험료는 보험요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85, FAX. 052-210-7033)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 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수당 : 원), (수당: 원) - 상여금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benefits :)won, (benefits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특례자 고용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대표자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신고대상 특례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1)	(2)	(3)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입국일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된 사업장(사업주)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특례자 고용사업장란의 소재지, 연락처 등은 기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가사사용인은 ①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②란의 사업장명과 ③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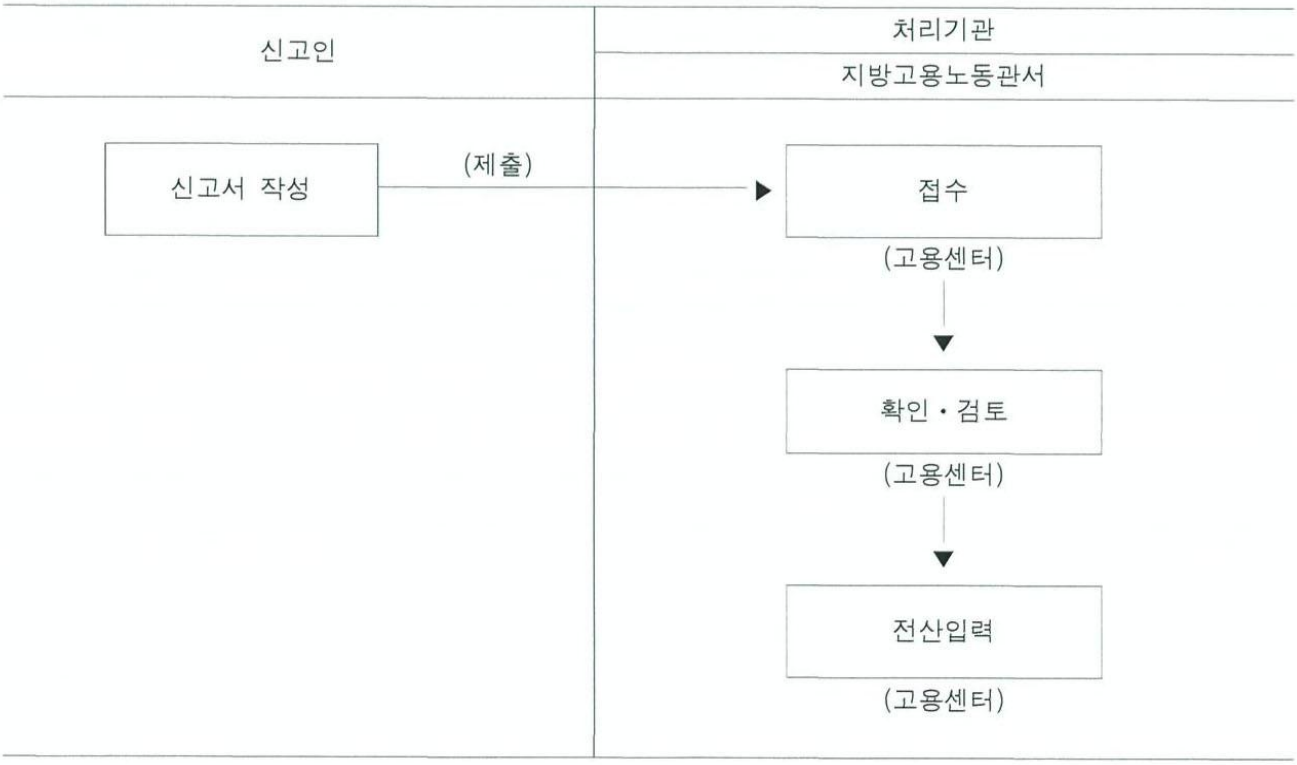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주소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고용변동 사유	[ ] 사망 [ ]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 경우 [ ] 사용자의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근로계약 중도 해지

	일련번호	(1)	(2)	(3)
신고대상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⑦성명(영어)			
	⑧국적			
	⑨여권번호			
	⑩외국인등록번호			
	⑪체류자격			
	⑫체류기간			
	⑬사유 발생일			
	⑭발생 사유			
	⑮휴대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⑤~⑥란은 고용허가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사사용인은 ②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③란의 사업장명과 ④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3. ⑦~⑨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⑩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발생사유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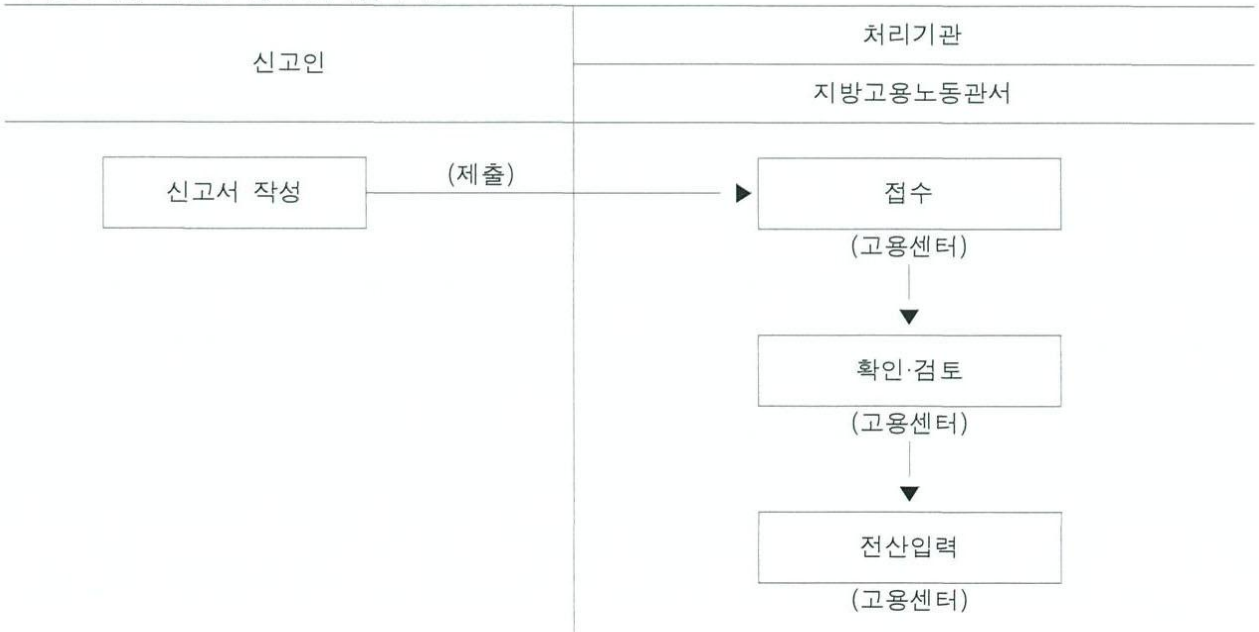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사업장정보 [ ]지사 간 이동 [ ]고용 승계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변동 전 사업장	⑤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⑦사업장명	⑧대표자	
	⑨소재지 주소	⑩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변동 후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사유발생일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⑪성명			
	⑫여권번호			
	⑬외국인등록번호			
	⑭휴대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⑩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기 바랍니다.
2. 가사사용인은 ⑥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⑦란의 사업장명과 ⑧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3. ⑪~⑫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⑬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고용센터)
	▼
	확인·검토 (고용센터)
	▼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국 적 (Nationality)	성 명 (Name in Full)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연장기간 (Departure Date)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

취업활동 연장 사업장 현황
(Workplace Information)

사업장명 (Place of Employment)	소 재 지 (Address)
대 표 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 No.)
사업자등록번호 (Identification No.)	업종 (Indust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됨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work period for the worker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ried at the above-mentioned workplace is to be extended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Article 14(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신청인 정보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연락처	한국 내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②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 근로계약 해지

[ ] 휴업·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 상해 등

3. 희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 업종(분류번호)	희망 직무내용(분류번호)
1		
2		
3		
희망 근무지역	1.( )시·도 ( )시·군·구 2.( )시·도 ( )시·군·구 [ ]관계 없음	
희망 임금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신청인 정보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 정보의 연락처는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6. 희망취업조건의 희망업종(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해 해당 업종의 중분류(두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희망취업조건의 희망직무내용(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고용직업분류표(KECO)'를 참고하여 해당 직무의 소분류(세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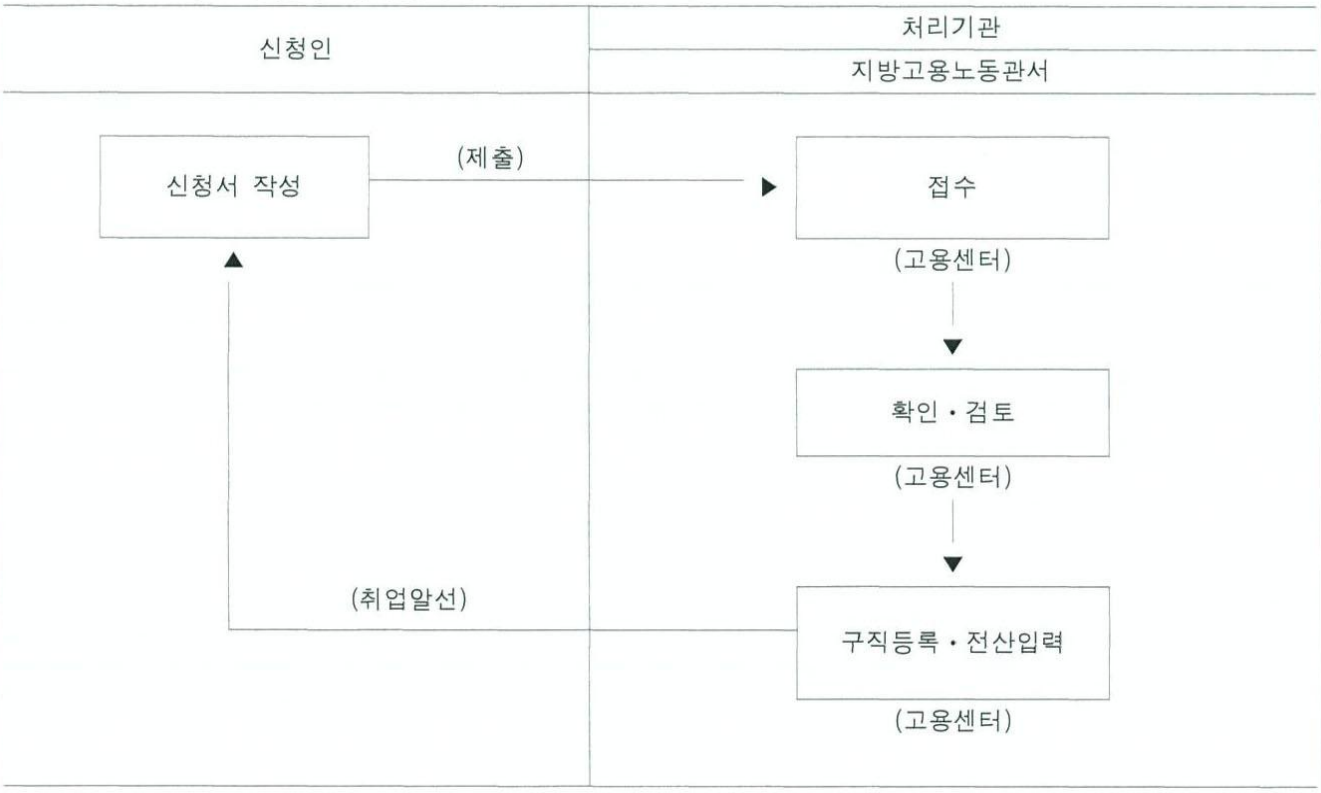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This is also available on the EPS web site at www.eps.go.kr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GREY SECTION IS FOR OFFICE USE ONLY

(Front page)

*Application	Date	Application Number	Authorized Department	*Prior Approval	Head	Section chief	Division chief	Assigned officer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 ].

① Applicant Information

Name (in English):	Alien Registration No. (Passport No.):
Nationality:	
Contact information: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Mobile phone No. (or a 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② Reason for Change of Workplace

[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 The reasons that are official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temporary shutdown or closure of business, employment permit cancellations and employment restrictions

[ ] Injuries

③ Preferred Conditions of Employment

Order of preference	Type of Business (Code)	Type of work task (Code)
1		
2		
3		
Business location	1.( ) City · Province ( ) Gun · Gu (County) 2.( ) City · Province ( ) Gun · Gu (County) [ ] Regardless	
Desired salary	Basic monthly salary of ( ) or more	

Other preferred working conditions (Duration of the employment, work hours, etc.)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YY/MM/DD)

Applicant (signature)

This application is made to the Head of OO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Submission by applicant	Copy of passport (if the applicant's alien registration cannot be verified as stipulated in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수수료 없음
Verification by authority	The authorized officer verifies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uthorization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I hereby accept the authorized government employees to disclose and transmit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for verification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not accepted, all requir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Applicant (signature)

Application Guidelines

1. Please submit your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2.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 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3.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4. English name must match the name on your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5. Provide valid mobile phone number or any other numbers where you cant be readily reached for timely job placement.
6. Refer to the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t the job center to complete "Type of Busines s (Code)" under "3. Preferred Conditions of Employment". Ask staff at the center for help.
7. Refer to the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ccupation) at the job center to complete "Type of Work Task (Code)" under "3. Preferred Conditions of Employment". Ask staff at the center for help.
8.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Procedures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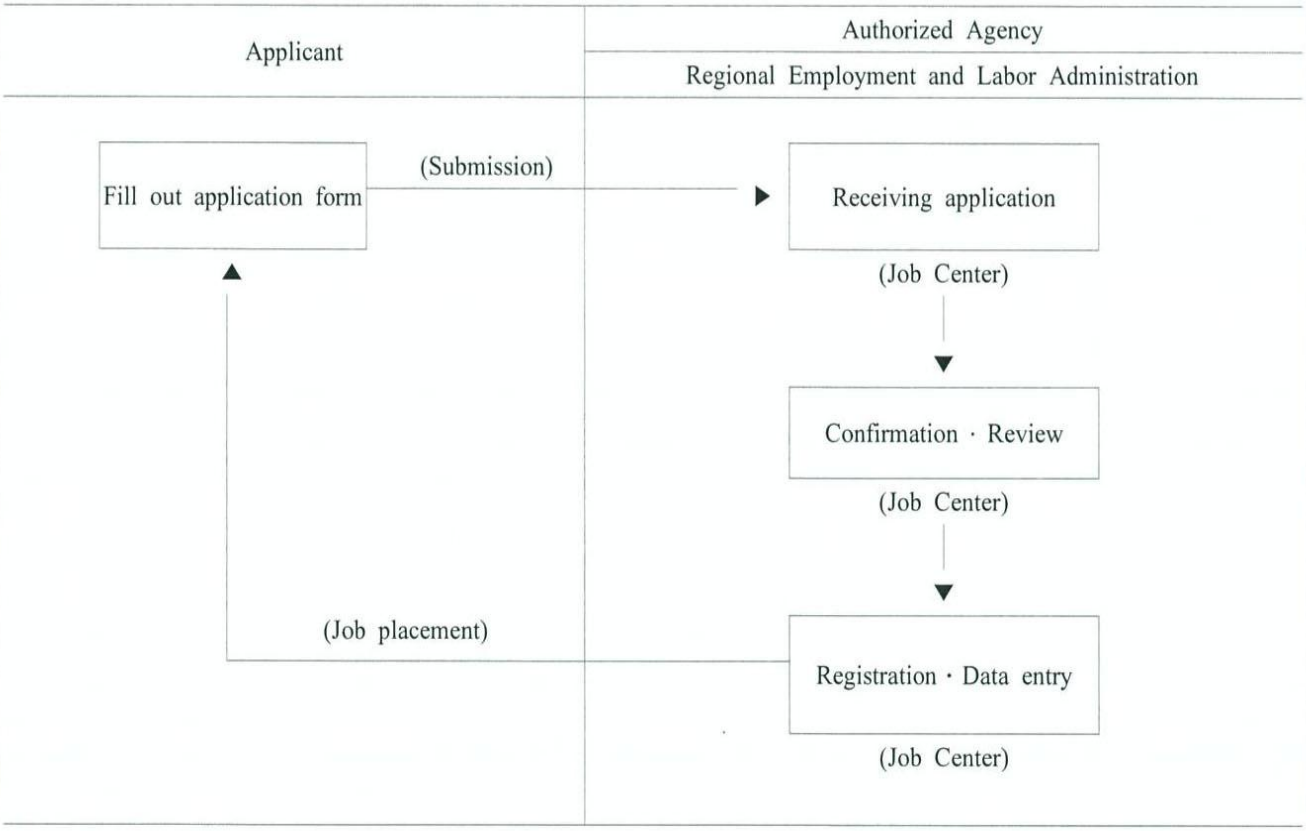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려는 사용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외국인노동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을 “그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8항 후단 중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